

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

1998. 12. 10
교육사회위원회

1. 제안자 : 충청북도지사 제출

2. 제안및회부일자

- 제안 : 1998년 12월 5일 제출
- 회부 : 1998년 12월 5일

3. 제안이유

-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623-5번지에 건립중인 충청북도장애인체육관이 98. 12월 준공 예정에 있어
- 장애인체육관 (장애인이용시설)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나, 기 제정되어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장애인복지법 제37조,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로 개정하여 통합 운영키 위함

4. 주요골자

- 제명 변경
 -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→충청북도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
- 시설명칭 변경
 -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→충청북도장애인복지시설
- 위치를 복지시설별로 지정 (제2조)
 - 복지관은 청주시 호암동 산55-24번지에, 체육관은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623-5번지에 둔다

5. 검토의견

본 조례안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

-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623-5번지에 건립중인 충청북도 장애인체육관이 98. 12월 준공 예정에 있어
- 장애인체육관 (장애인이용시설)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나,

기 제정되어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장애인복지법 제37조,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및운영조례로 개정하여 통합 운영키 위한 것으로

타당하다고 사료됨